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8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정진욱의원안, 정부안)	3

I. 개요

1.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7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7. 28.
- (3) 회 부 일 : 2025.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정진욱의원안, 정부안)

현 행	정진욱의원안	정부안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26) ○ 대상: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 기업 * ①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채권자채무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②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포함한 계획 ○ 내용: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자산 양도차익 <u>4년</u> 거치 <u>3년</u>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26. 12. 31.	□ 양도차익상당액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 확대 ○ 대상: (현행과 같음) ○ 내용: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자산 양도차익 <u>6년</u> 거치 <u>5년</u>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 1. 1.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기업 양도차익상당액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 확대 ○ 대상: (현행과 같음) ○ 내용: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자산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기업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 1. 1.

현 행	정진욱의원안	정부안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진욱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¹⁾에 따라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 일부에 대하여 4년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 총액 및 내용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4.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11. (생략)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년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과세특례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안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6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익금산입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²⁾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해소,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에 한하여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익금산입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절차, 규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2024년 8월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법률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2024년 7월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된 상태임.

사업재편계획 신청 유형은 크게 신산업 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³⁾, 이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공급망 위협: 경제·통상·정치·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과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때 신산업 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이 포함됨.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 재무건전성, 산업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사업재편계획기간 동안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산업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
2. 별표 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 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절차 간소화, 자금·세제 우대 등의 특례를 적용받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특례]

구 분	주요 내용
조직제도 간소화	▪ (상법) 소규모분할제도 도입,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주식교환 범위 확대 등
절차 간소화	▪ (공정거래법) 사업재편계획 제출과 기업결합신고 창구 단일화
세제 지원	▪ 세제 지원에 대한 포괄적 근거규정 마련
자금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자금 지원 ▪ 판로개척, 정보제공, 경영·기술·회계자문 등 사업혁신 지원
고용안정 지원	▪ 전문교육, 창업·재취업 교육, 전직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규제 특례	▪ 규제 불확실성 해소제도(그레이존해소제도) ▪ 기업 제안방식 규제개선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6년 최초 승인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53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고, 2025년에는 10월 말까지 총 51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승인하였음.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업수(연간)	15	51	34	9	57	108	106	93	57
기업수(누적)	15	66	100	109	166	274	380	473	53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경우 2022년 10월 31일 경상북도 포항시가 지정된 바 있으나 2024년 10월 30일부로 해제되었고, 2025년 5월에 전라남도 여수시가 신규지정되었으며, 2025년 8월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추가 지정되었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현황]

구 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근거법령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신청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2025. 5. 1. ~ 2027. 4. 30.) - 충청남도 서산시(2025. 8. 28. ~2027. 8. 27.) - 경상북도 포항시(2025. 8. 28. ~2027. 8. 27.)
지정기간	- 2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장기적인 저성장 또는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계기업⁵⁾ 비중이 기업 수⁶⁾ 기준

16.4%, 차입금 기준 26.0%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한계기업이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고 존속할 경우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어 신용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장기존속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한계기업 비중 현황]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업 수 기준	14.4	14.8	14.3	13.6	14.2	14.8	15.3	14.9	15.5	16.4
차입금 기준	19.5	19.9	17.3	15.6	16.0	17.0	17.8	16.7	18.5	26.0

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외부감사 기업(금융·보험업 등 제외)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한국은행

참고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⁷⁾ 결과에 따르면, 사업재편 인센티브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① 정책자금(34.5%), ②세제지원(21.8%), ③ R&D 지원규모 확대(21%)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되어 고용시장 안정에

5) 한국은행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음

6) 2024년 7월말 기준 비금융법인 외감기업 28,946개(대기업 5,474개, 중소기업 23,472개) 대상

7) 대한상공회의소, 2020년도 사업재편 설문조사 결과(2020.5. 100개사 대상 수행)

기여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세 차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1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는데, 해당 조치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 1,511억원의 투자와 더불어 2,015명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⁸⁾⁹⁾¹⁰⁾

셋째, 정부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인데, 최근 대외여건 변화 및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최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과 중동 등 세계적인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불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여수시와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음.

또한, 포항시는 미국의 관세인상,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 등에 따른 산업 악화로 인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패권 경쟁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전략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사업재편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

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반도체·배터리 등 24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2025. 3.

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반도체·배터리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2025. 6.

1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로봇 등 1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2025. 9.

중임.

먼저 본 특례와 같은 양도차익 과세이연¹¹⁾ 외에도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¹²⁾, 설립등기 등으로 자본금 증가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¹³⁾,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100%)¹⁴⁾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적용됨.

또한, 신용위험평가 면제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요건 완화와 같은 금융·자금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율 상향 등 고용안정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및 지원요건 완화¹⁵⁾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둘째,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본 특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0.1억원 미만의 조세지출 실적을 보이고 있음.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0.1	0.1	0.1	0	0	0.1	0.1	0.1	0.1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4)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15)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기존 사업장 축소 허용 등

셋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원재료 구입, 제품 생산 등 기업운영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하여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지역 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